# 3사 3공제를 통해 본 고려의 황제국적지위

박사 부교수 윤 신 영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력대 봉건국가들은 시대에 따라 강약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중앙 집권적국가들이였습니다.》(《김정일전집》제6권 424폐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통치체제에 기초하여 전국에 대한 통일적지배를 실시한 중앙집권적봉건국가였으며 최고권력자인 국왕을 황제로 칭하고 국가형식과 권력구조도 황제국의 체모를 충분히 갖추었을뿐아니라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 황제국이였다.

고려가 황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은 최고권력자인 국왕에 대한 존칭과 국왕의 명령지시, 종실, 중신, 수도에 대한 호칭, 복식제도, 년호제정, 국가기구 및 통치체제의 격식 등과 함께 3사 3공제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3사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로서 국왕 또는 왕태자의 자문에 대응하며 학술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즉 국왕과 왕태자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예직이며 3공은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으로서 국왕의 가까운 일가나 국왕을 도와 나라의 정사를 총괄하는 특별한 공신들에게 주는 명예직이였다.

3사(三師) 3공(三公)제는 황제국에서만 실시하게 되여있는 제도로서 고려의 3사 3공 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밝히는것은 고려봉건국가의 황제국적지위, 고려의 중앙통치제도를 전면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3사 3공의 의미와 그 지위, 3사 3공제의 실시기간, 3사 3공의 임명 등 고려의 3사 3공제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고려는 당당한 황제국이였다는것을 립증하려고 한다.

## 2. 본 론

## 2. 1.3사 3공의 의미와 지위

고려의 3사 3공제에 대하여 론할 때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로 알 필 요가 있다.

《고려사》백관지 3사 3공조에서는 3사 3공의 이름만 렬거하고 해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자리를 비워두며 그 설치시기는 알수 없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록하였을뿐 3사 3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3사 3공의 의미에 대하여 서로 각이하게 론하여왔다.

3사는 황제의 스승들에게 주는 명예직이며 3공은 황제에 가까운 일가와 그들의 사 위 즉 《제왕》에게 주는 명예직이라고 보는 견해, 3사는 국왕을 위해 자문과 학술방조를 하는 선생이고 3공은 세자의 학습지도를 하는 스승이라고 보는 견해, 3사 3공은 봉건국 가에서 임금의 스승인 삼사와 임금을 도와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삼공을 아울러 이 르는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우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3사가 임금의 스승으로서 국왕의 자문과 학술방조를 하는 일을 맡아하였다는데 대하여서는 서로 공통적이지만 3공에 대하여서는 종실과 그들의 사위에게 주는 명예직, 왕세자의 학술지도를 하는 스승, 임금을 도와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중신 등으로 각이하게 해석하고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다같이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고있지만 3사 3공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우선 3사에 대한 리해에서 3사는 국왕의 자문과 학술방조를 하는 스승이라고만 보는것보다 임금과 태자의 자문과 학술방조를 하는 스승으로 보는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고려사》 세가와 지부분에 국왕의 스승인 태사, 태부, 태보와 함께 태자의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태자태사, 태자태부, 태자태보를 임명하였다는 자료가 전해지기때문이다.

《고려사》 권77 백관지 동궁관조에서는 《문종 22년에 태사, 태부, 태보를 각각 1명씩 두고 그 품계는 종1품으로 하였다. …예종 11년에 태자관속을 태사, 태부, 태보 및 소사, 소부, 소보, 빈객, 서자, 유덕, 시강학사, 시독학사, 찬선, 중사인, 중윤, 첨사, 소첨사, 수경 령으로 정하고 그 품계는 모두 문종때에 정한대로 하였으며 나머지관직들은 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있다.

이것을 통하여 고려봉건국가에서는 국왕의 스승인 태사, 태부, 태보를 두는것과 함께 왕태자의 스승인 태자태사, 태자태부, 태자태보도 같이 임명배치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3사를 국왕의 스승으로만 보기보다는 국왕과 왕태자의 스승으로 보는것이 더 적중한 해석으로 된다고 본다.

또한 3공에 대한 리해에서 3공을 종실과 그들의 사위에게 주는 명예직, 왕세자의 학술지도를 하는 스승으로 보기보다는 임금을 도와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중신으로 보는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3공을 종실과 그들의 사위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해석하는 경우 국왕의 아들, 형제, 조카 등 친족들과 종실출신 녀자들에게 장가든 사람들만이 3공으로 될수 있다는 론거가서게 되는데 실제로 고려봉건국가에서 3공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종실과 그 사위들도 있지만 그밖의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들수 있지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3공을 종실과 그들의 사위에게만 주는 명예직으로 보는것은 일면적인 해석으로 된다.

3공을 왕세자의 학술지도를 하는 스승으로만 보는것 역시 편협한 견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왕태자 또는 왕세자의 교육과 그밖의 제반 사무를 직접 담당한 동궁의 관료들을 보면 태사, 태부, 태보와 함께 소사, 소부, 소보, 빈객 등의 관직은 있으나 3공인 태위, 사도, 사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고려사》권77 백관지 동궁관

이와 함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모든 자료들을 보아도 태자태위, 태자사도, 태자사공이라는 표현은 찾아볼수 없으며 태위, 사도, 사공이 왕태자에게 종속되여있었다는

자료적근거도 별로 없다.

이것은 3공을 왕태자, 왕세자의 학술지도를 맡은 스승이라고 보는것이 적중한 해석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준다.

3공은 국왕을 도와 나라의 전반적인 일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중신이였다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고려봉건국가에서 3공으로 내신된 성원들 대다수가 높은 급의 관직을 겸하고 있었기때문이다.

1017년에 검교태위였던 장영은 좌산기상시 참지정사를 겸하였으며 왕자 기는 1031년에 수태위 겸 상서령 개성국공으로 책봉되였고 1086년 수태위였던 김원충은 내사문하성의 최고관직인 문하시중을 겸하였다. 그리고 1095년 수사도였던 김상기는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를, 1103년에 수사도였던 림간은 판병부사를, 수사도였던 위계정은 판례부사를, 검교사도 수사공이였던 리오는 판형부사를 각각 겸하였으며 1105년 검교태위 수사도였던 최홍사는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겸 태자태보 판상서례부사 수국사였고, 수사도였던 리오는 태자소사 겸 서경류수사였다.\*

\*《고러사》권4 세가 현종 8년 정월, 권5 세가 현종 22년 2월, 권10 세가 선종 3년 2월, 권11 세가 숙종 즉위년 10월, 권12 세가 숙종 8년 2월,10년 6월

이러한 자료들은 3공으로 내신된 성원들이 중요관직을 겸하고있었던것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려봉건국가에서 3공으로 임명된 성원들이 거의다 높은 급의 중앙관직을 겸하고있었던 력사적사실은 태위, 사도, 사공 등 3공을 국왕을 도와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중신들이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된다는것을 립증해준다.

이상의 론거들을 종합해보면 3사는 국왕과 왕태자의 자문과 학술방조를 하는 스승들이며 3공은 국왕을 도와 나라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중신들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고려의 3사 3공제를 론하면서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였는가 하는것을 밝히는것도 중 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본다.

《고려사》백관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청과 관원들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3사 3공을 제일 처음으로 서술하였다. 이것은 3사 3공이 고려봉건국가에서 내사문하성, 어사 도성, 삼사, 6조를 비롯한 모든 관청과 수많은 관원들의 제일 웃자리에 놓이는 지위에 있 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그리고 3사 3공조에서는 《문종이 3사로 공을 정할 때 각각 1명씩이였는데 모두 정1품이였다.》라고 기록하였고 동궁관조에서는 《태사, 태부, 태보를 각각 1명씩 두고 그 품계는 종1품으로 하였다.》라고 전하고있다.

우의 자료들을 통하여 태사, 태부, 태보, 태위, 사도, 사공의 벼슬품계는 문무백관의 제일 첫번째 품계인 정1품이며 태자태사, 태자태부, 태자태보는 3사 3공보다 반등급이 낮은 종1품이였다는것 다시말하여 국왕의 스승, 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3사 3공은 정1품이며 왕태자의 스승, 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3사는 종1품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3사 3공은 국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문무백관의 제일 웃자리를 차지하고 국가의 모든 정사를 관할하는 지위에 있었다.

국왕의 스승, 보좌관격인 3사 3공은 비록 다같은 정1품이라고 하지만 그들 내부에서 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근거는 우선 3사 3공을 다같이 기록한《고려사》백관지 3사 3공조에서 서렬순서가 태사, 태부, 태보, 태위, 사도, 사공으로 되여있으며 3사 3공에 임명된 관료들의 실직을 보면 대체로 태사, 태부, 태보, 태위, 사도, 사공의 순서로 그 관직이 높기때문이다.

실례로 1014년에 류진은 검교태사 수문하시중으로 임명되였으며 1017년에 장영은 검교태위 좌산기상시 참지정사였다.\*

\* 《고려사》 권4 세가 현종 5년 4월, 8년 정월

1021년에 최사위를 검교태사 수문하시중으로, 최항을 검교태부 수문하시랑 동내사문하 평장사로, 유방을 검교태보로, 채충순과 윤징고를 다같이 검교태위로 각각 임명하였다.\*

\* 《고려사》 권4 세가 현종 12년 8월

3사 3공의 임명관계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문하시중이 태사로 임명되는 경우 가 많았으며 그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낮은 관직의 성원들이 차례로 태부, 태보, 태위, 사도, 사공으로 임명되였다. 물론 이러한 임명방식이 절대적인것이 아니며 시기에 따라서 또 개별적인물에 따라서 낮은 급의 실직을 가진자가 태사, 태부 등 앞선 순위의 3사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는것을 부언해둔다.

근거는 또한 개별적인 관료들이 사공으로부터 태사로 올라가는 순서로 3사 3공에 임명되였기때문이다.

애국명장이였던 강감찬은 1019년에 검교태위, 1021년 검교태부, 1031년 검교태사로 임명되였으며 12세기초 대관료였으며 1126년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실권을 틀어쥔 다 음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던 리자겸은 1111년에 검교사공, 1112년에 수사공, 1113년 에 검교사도, 1114년에 수사도, 1115년에 수태위, 1122년에 수태사로 임명되였다. \*

\*《고려사》권94 렬전 강감찬

《고려사》 권13 세가 예종 6년 12월, 7년 9월, 8년 12월, 9년 12월, 10년 6월, 권15 인종 즉위년 5월

우의 자료들에서 검교태사, 검교태부, 검교사도, 수태사, 수사도, 수사공 등 3사 3공 의 이름앞에 《검교》, 《수》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있는것이 적지 않은데 검교(檢校)는 고려 와 조선봉건왕조초기 벼슬아치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에 립시로 관리의 수를 늘 였거나 실지 맡은 일은 없고 벼슬이름만 가지고있게 한 벼슬아치의 관직이름앞에 붙이던 말이며 수(守)는 낮은 품계의 관리가 자기 품계보다 높은 벼슬을 하는 경우 그 벼슬앞에 붙이는 말이다.

근거는 또한 중국의 한나라시기 자료에 태사가 제일 웃자리이고 다음은 태부 그 다 음은 태보라고 전하기때문이다.

《태사와 태보는 모두 오랜 관직인데 평제 원시 원년(1년)에 모두 처음으로 설치되였 다. 금인장과 붉은 인끈을 둘렀다. 태사는 지위가 태부의 웃자리이고 태보는 태부의 다음 이다.》\*

#### \*《한서》권19 상 표7 상

이로부터 3사 3공은 다같이 정1품의 품계에 속하는 고위관료들이라고는 하지만 실 제로 그들 내부에서 일정한 차등이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3사 3공제는 황제국의 체제하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였다.

일반적으로 황제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는 제국의 통치체계와 형식을 가지게 되며 대외관계에서 아무리 큰 나라와도 대등한 립장에서 국교관계를 맺을수 있다. 이와는 달리제후국인 경우에는 군주가 한갖 제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황제국의 국가기구와 형식,호칭을 사용할수 없었으며 독자적인 년호도 제정할수 없었다. 이것은 중세기 동방사회의어길수 없는 하나의 준칙으로 되여왔다.

외세에 의존하여 자기의 통치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나라를 황제국으로 섬기던 경효왕(충렬왕)은 1275년에 황제국의 체모를 갖추고있던 고려봉건국가의 전반적인 통치기구와 체계를 제후국의 통치기구와 체계로 바꾸는 사대굴욕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3사 3공제도는 황제국에서만 실시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웃나라의 권위》에 저촉된다고 보고 3사 3공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제31대왕 경효왕(공민왕)이 1356년에 3사 3공제를 다시 복구하였는데 이것은 고려봉건국가에서 친원정책으로부터 반원정책으로 넘어가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과 동시에 황제국의 체모를다시 갖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일환이였다.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새 왕조를 세운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도 역시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에 깊숙이 물젖어 제후국의 격식에 맞게 국가통치체제를 제정실시하다나니 조선 봉건왕조시기에는 3사 3공제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한편 중국의 력대 왕조들중에서 황제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은 례외없이 3사 3공 제를 실시하였으며 저들에게 복종하는 여러 제후국의 국왕들을 3사 또는 3공으로 책봉 한 실례는 무수하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3사 3공제가 황제국의 체제하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황제국에서만 제정실시되는 3사 3공제가 고려에 존재하였다는것은 고려가 황제국의 지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된다.

## 2. 2.3사 3공제의 실시기간

고려의 3사 3공제에 대한 연구에서 그 실시기간을 정확히 밝히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였는가 하는것은 황제국으로서의 고려의 지위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고려사》백관지에서는 《언제부터 3사 3공을 두었는지는 알수 없다. 문종이 3사로 공을 정할 때 각각 1명씩이였는데 모두 정1품이였다. 경효왕(충렬왕)때 폐지한것을 경효왕(공민왕) 5년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11년에 다시 폐지하였다.》\*고 기록함으로써 고려시기 3사 3공제가 언제부터 실시되였는가에 대하여 모호하게 전하고있다.

#### \* 《고려사》 권76 백관지 3사 3공

우의 자료를 절대시하면서 고려에서는 3사 3공제가 11세기 후반기 문종통치시기에 제정된 후 1275년에 폐지되였다가 고려말에 복구되였다고 보는것이 보편적이였다.

연구사업이 심화되여 이미 태조년간에 증직으로 적용한 사실로 보아 이때부터 3사 3공제도가 있었고 현종년간에 이르러서는 종실과 공신들을 널리 임명하였으며 1275년 경효왕(충렬왕) 원년에 이 제도는 페지되였다고 밝힘으로써 3사 3공제의 실시기간문제해 명에서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고려시기 3사 3공제의 실시기간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론하려고 한다.

고려에서 3사 3공제는 현종집권시기(1010년—1031년)에 실시되기 시작하여 원종집 권시기(1260년—1274년)까지 실시되다가 1275년에 폐지되였으며 그후 1356년에 다시 복구되였다고 보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고려시기 3사 3공제는 고려봉건국가초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계속 실시되였다고 본다.

우선 3사 3공제는 고려봉건국가초기부터 실시되였다고 볼수 있다.

고려에서 국가성립초기부터 3사 3공제가 실시되였다고 볼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태조집권시기(918년 - 943년)에 벌써 3사 3공의 존재와 관련한 자료들이 전해지는것이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6년 11월초에는 내봉경이였던 최응이 죽으니 태자태보로 추증하였다고 기록하고있으며《고려사》권92 렬전 공직조에서는 태조 22년에 공직이 죽으니 태조가 사신을 보내여 조문하고 정광벼슬을 추증하였으며 후에 또 사공 삼중대광벼슬을 추증하였다고 전하고있다.

최응은 태봉국시기 궁예의 서기격으로 있으면서 궁예가 왕건을 불러놓고 반역을 음모한다고 문초할 때 붓대를 떨구고 그것을 집으면서 왕건에게 귀속말로 여쭈어 그를 살려준 왕건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이며 공직은 후기신라말기 지방할거세력으로서 매곡성장군이 되여 후백제의 견훤에게 복종하다가 후백제의 쇠퇴상을 보고 932년에 고려에 투항해온 인물로서 왕건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였다.

933년(태조 16년), 939년(태조 22년)의 력사적사실들을 기록한 사료들에 중신이였던 최응과 공직을 태자태보, 사공으로 추증하였다는 자료가 보이는것은 당시 집권세력이 그 것을 국가통치에 적용실시하였다는것을 시사해준다.

태조이후에도 3사 3공제와 관련한 자료는 적지 않게 나온다.

태조이후부터 현종이전까지 3사 3공제실시와 관련한 일부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949년 정월 대광 왕식렴이 죽으니 태사로 추증하였다.

964년 8월에 사도 박수경이 죽었다.

987년 3월 내사령 최지몽이 죽으니 태자태부로, 태사로 추증하였다.

989년 5월 수시중 최승로가 죽으니 태사로 추증하였다.

995년 4월 평장사 최량이 죽으니 태자태사로 추증하고 후에 태위 태보로 추증하였다.

998년 7월 태보 내사령 서희가 죽었다.

(이상의 자료들은 《고려사절요》 권1. 권2의 해당 년도에 있음.)

949년 왕건의 사촌동생 왕식렴이 죽으니 태사벼슬을 추증하였다.

정종년간(946~949년)에 죽은 박술희에게 태사 삼중대광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987년 최지몽이 죽으니 태자태부를 추증하였고 후에 태사를 더 추증하였다.

994년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4명에게 모두 태사벼슬을 추증하였다.

994년 이미전에(941년) 죽은 유금필에게 태사벼슬을 추증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고려사》권92 렬전 왕식렴, 박술희, 최지몽, 홍유, 유금필조에 있음.) 이러한 자료들은 고려에서 태조년간뿐아니라 그 이후에도 3사 3공제가 중단됨이 없 이 계속 실시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려에서 3사 3공제가 11세기 후반기 또는 11세기 초엽부터 실시되였다고 보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고려시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기본자료라고 할수 있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이 시기의 3사 3공관련자료들이 현종이후시기와 비교해볼 때 현저히 적게 기록되었으며 실직임명보다 추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리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전해오는 자료의 결핍으로 초래되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편찬에 리용된 기본자료는 《고려실록》이였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초기부터 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하여 그후에도 계속 진행되였으며 그것은 말기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였다.

그런데 1011년 거란의 침입으로 인하여 사고의 책이 다 불타버린 후 1013년에 실록에 대한 재편찬사업이 진행되였다. 이때 황주량이 태조로부터 목종까지 7대 왕의 실록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 \*《고려사》권95 렬전 황주량

아마도 이때 다시 편찬된 고려실록은 해당 시기에 편찬된 실록보다 훨씬 빈약하고 빠진 자료들이 많았을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해오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보면 현종 이전시기의 기사는 매우 소략되고 내용이 빈약하지만 그 이후 기사는 비교적 자세하다.

이러한 리유로 하여 태조로부터 목종왕까지의 3사 3공관련자료는 현종이후시기의 자료에 비해볼 때 매우 적을뿐아니라 그것도 실직임명자료보다 추증자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고 볼수 있다.

또한 3사 3공제는 1275년-1356년간에도 비록 이전시기만큼 광범하게 실시되지는 못하였지만 중단없이 계속 실시되였다고 본다.

원나라에 대한 사대관념에 깊이 물젖어있던 경효왕(충렬왕)은 즉위 원년(1275년)에 상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관제를 크게 개정하였는데 이때 3사 3공제도도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3사 3공제는 계속 유지되였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1308년 5월 신묘일에 조인규를 사도 시중 참지광정원사로, 홍 규를 수사도 령경령궁사로, 정가신을 사공 우복야 수문전대학사 감수국사 참광정원사로, 김흔을 검교수사도 령봉상시사로, 차신과 리지저를 모두 검교사도 자정원사로, 최유엄을 검교사공 사헌대부로, 리혼을 검교사공 서경류수 평양부윤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해 7월 무술일에는 한희유를 수사공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344년에 강호례는 사공이였다.\*

## \*《고려사》권33 세가 선효왕 즉위년 5월,7월, 권37 현효왕 즉위년 윤2월

우의 자료를 통하여 경효왕(충렬왕)이 즉위하면서 폐지한 3사 3공제는 그다음 왕인 선효왕(충선왕) 즉위년에 다시 복구되였으며 그 이후 현효왕(충목왕)대에도 계속 실시되 였는것을 알수 있다.

3사 3공제가 폐지되였다고 하는 시기에도 사도, 사공과 같은 3공을 임명하였다는 력 사적사실은 1275년—1356년간의 3사 3공제폐지가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폐지 또는 부문적인 폐지라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1275년 - 1356년간에도 고려봉건국가에서는 3사 3공제가 종전과 같은 규모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계속 유지되였다.

고려시기 3사 3공제가 초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계속 실시되였다는것은 고려 봉건국가가 전반기는 물론 거듭되는 외래침략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 쟁이 전면에 나섰던 고려후반기에도 황제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 준다.

## 2. 3.3사 3공의 임명

고려봉건국가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3사 3공제를 실시하면서 적 지 않은 종실인물들과 공신, 중신들을 3사 3공으로 임명하였다.

《고려사》백관지에서 《만일 3사 3공으로 될만 한 인물이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둔 다. …문종이 3사로 공을 정할 때 각각 1명이였는데 모두 정1품이였다.》\*고 전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3사 3공으로는 특출한 공적과 높은 학식, 국가의 제반 정사를 통솔할만 한 통치자적자질을 충분히 갖춘자들로 임명하였으며 만일 그러한 인물이 없다면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는것, 그 정원은 각각 1명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 \* 《고려사》 권76 백관지 3사 3공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이 무조건 지켜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1010년부터 1034년까지 25년간에 임명된 3사 3공을 보면 태사 6명, 태부 3명, 태위 3명, 태보 1명, 사도와 사공이 각각 2명이다.\*

## \*《고려사》권5 세가 현종, 덕종, 정종즉위년

이것은 이 기간에 정원수보다 많은 인원이 3사 3공으로 임명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국왕이 가장 신입하는 최고의 명예직인 3사 3공으로는 종실인물들과 공신들을 기본 으로 하여 임명되였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우선 적지 않은 종실인물들을 3사 3공으로 임명하였다.

종실가운데서 3사 3굥으로 임명된 대표적인 기록은 현종의 아들인 평양공 기에 관 한 자료이다.《고려사》렬전에 의하면 기는 1031년에 태위 겸 상서령으로, 1034년에 태 보 겸 상서령으로, 1049년에 태사 겸 내사령으로 임명되였다. 그리고 평양공 왕기의 아들 인 왕진은 태위로, 왕거는 사공으로, 왕영은 사도 및 태위로 임명되였으며 왕영의 아들 왕정은 검교사공으로 승진되였다가 숙종의 딸에게 장가든 후 특진 검교사도 수사공의 관 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후손들인 왕자, 왕환, 왕시, 왕화, 왕희, 왕충 등도 사도, 사 공, 태사직을 받았다.\*

### \*《고려사》권90 렬전 종실 평양공 기

이밖에도 상안공 왕수가 1071년에 사공으로, 금관후 왕비가 1077년에 특진 검교사 공으로, 변안후 왕음이 1077년에 특진 검교사공으로 임명되였다가 1086년에 검교 상서 령 수사도의 관직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종실인물들가운데서 3사 3공으로 임명된 기록은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종실들의 3사 3공임명관계기사를 보면 태사. 태보 등 3사에 임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다수가 태위, 사공, 사도 등 3공직에 많이 임명되였다. 종실인물들은 비록 3사 3공직에 적 지 않게 임명되였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명예직을 차지하고 대우만을 받고있었다고 본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또한 공신들을 3사 3공으로 임명하였다.

공신으로서 3사 3공에 임명된 대표적인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995년에 서희장군은 태보 내사령으로, 강감찬장군은 1019년에 검교태위, 1021년 검교태부, 1030년 검교태사로 각각 임명받은 일이 있었다.\*

### \*《고려사》권94 렬전 서희, 강감찬

고려봉건국가의 제8대왕인 현종왕은 집권기간(1010~1031년)에 류진을 검교태사로, 강감찬을 검교태사, 검교태위, 특진 검교태부로, 최사위를 검교태사, 태자태사로, 최항을 검교태부로, 유방을 검교태보, 태자태보로, 채충순, 윤징고를 각각 검교태위로, 리공을 검교사공으로, 리원을 검교태자태보로, 리가도를 검교태위로, 서눌을 검교태사로, 이응보를 수사도로, 김여탁을 수사공으로, 박눌암을 검교태부로 임명하였다.\*

## \*《고려사》권4~5 세가 현종 《고려사절요》권3 현종

그리고 임의는 예종때에 수태위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의 관직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인 임원후는 묘청정변이후 동덕좌리공신칭호와 개부의동삼사 검교태부의 관직을 받 았고 미구에 문하시랑평장사로 되였다. 그후 수태보 판서경류수사의 관직을 더 받았으며 의종즉위후 선충안사좌리동덕공신칭호와 삼중대광 개부의동삼사 수태위관직과 상주국훈 위를 받았다.\*

#### \*《고려사》권95 렬전 임의

이러한 3사 3공임명관계기사를 통하여 공신들은 종실들과는 달리 태사, 태부, 태보 등 3사에 임명받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또한 증직(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과 품계를 올려주는것)의 형태로 3사 3공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고려봉건국가초기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3사 3공으로 추증되였다.

1033년 10월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선대의 공신들인 최응을 사도로, 류신성을 태부로, 서희를 태사로, 리몽유를 사공으로, 한언공을 태부로, 김승조를 사공으로, 한언공을 태부 로, 김승조를 사공으로, 최숙을 태사로 각각 추증하였다.\*

### \* 《고려사》 권5 세가 덕종 2년 10월

이밖에도 추증의 형태로 3사 3공직을 받은 자료는 적지 않게 전해지고있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또한 왕태자의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태자 3사도 임명하였다.

《고려사》의 세가에는 《최사위를 태자태사로》, 《김경용을 태자태사 수사공으로》, 《필 광찬을 검교태자태사 상호군으로》, 《김부식을 검교태사 집현전대학사 태자태사로》, 《문황을 검교태자태부로》, 《위계정을 태자태부로, 최홍사를 검교태위 수사도 중서시랑동중서문 하평장사 겸 태자태보 판상서례부사수국사로》, 《최유청을 판병부사 태자태부로 …임극충을 대자태보로》, 《리장용을 수태부 판병부사 태자태부로, 류경을 수태보 참지정사 태자태보로》 각각 임명하였다는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고려사》권5 세가 현종 18년 5월, 권12 세가 예종 즉위년 11월, 권16 세가 인종 16년 12월, 권10 세가 선종 4년 9월, 권12 세가 숙종 10년 6월, 권18 세가 의종 18년 12월, 권25 세가 원종 4년 12월

이밖에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태자태사, 태자태부, 태자태보를 임명한 기사들 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처럼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적지 않은 종실인물들과 공신, 중신들을 3사 3공으로 임 명하였을뿐아니라 높은 관직을 지니고 봉건국가에 소위 공적이 있다고 하는자들에게 추증 의 형태로 3사 3공직을 수여하였으며 왕태자의 스승인 태자 3사도 적지 않게 임명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3사 3공제가 자기의 체모를 충분히 갖추고 활발히 운영되였음을 보 여주는것과 동시에 고려봉건국가는 통치체제의 측면에서도 황제국의 지위를 당당히 갖추 고있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 3.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고려봉건국가에서는 건국초기부터 3사 3공제가 실시되였으며 이 제도는 고려말기까지 계속 유지되였다.

태사, 태부, 태보로 불리우는 3사는 국왕과 왕태자의 스승, 학술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태위, 사도, 사공으로 불리우는 3공은 국왕을 도와 나라의 모든 일을 주관 하는 중신들이였다.

3사 3공으로는 왕족과 그에 가까운 친척들, 봉건국가를 위하여 소위 공적을 세웠다 고 하는 공신들, 3성과 6부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중신들이 임명되였다.

3사 3곳으로 임명되자들은 국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문무백관의 제일 웃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전적으로 국왕의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사 3공은 다같이 정1품의 벼슬품계를 가지고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 내부에서 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즉 3공에 비해볼 때 3사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있었으며 3사 중에서도 태사, 태부, 태보의 순위로 차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있던 실직도 이러한 순위대로 높고 낮은 차이가 있었다.

3사 3공제의 완전한 체모를 갖추고 초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이 제도가 활발 히 운영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봉건국가는 황제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실마리어 3사 3공,《고려사》